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470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 박성민·강선영·김석기

김정재 · 김기현 · 서범수

김상욱 • 박덕흠 • 이상휘
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석유·가스·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·조선 등 국가기 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·포항·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 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,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가능 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위한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.

이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지역개발 및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에 출연·보조 또는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76조, 제78조부 터 제81까지 및 제81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346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 중 "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"를 "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으로"로 한다.

제78조제1항제7호 중 "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"를 "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으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제6호 중 "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,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5 대공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로 한다.

제79조제1항제6호 중 "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"를 "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으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제15호 중 "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,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,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하고, 전환 및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으로의"로 한다.

제80조제1항제2호 중 "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"를 ",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으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"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,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를 ",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"로 한다.

제81조제1항제2호 중 "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"를 "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으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제3호 중 "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"를 ",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"를 5 대고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으로의"로 한다.

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1조의2(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해오름 산업벨트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 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 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 - 3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
 - 4.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
 - 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 - ② 회계의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해오름산업벨트지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·보조 또는 융자 등
 - 가. 제78조제2항제1호(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)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
 - 나.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·보조·융자 및 지원 등
 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

보조사업

- 2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-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 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- 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
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·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6조(계정의 구분) 회계는 지역	제76조(계정의 구분)
자율계정, 지역지원계정, 제주	
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	<u>,</u> 세종특별자치
<u>치시계정으로</u> 구분한다.	시계정 및 해오름산업벨트지원
	계정으로
제78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	제78조(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
세출)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	세출) ①
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회계의 지역지원계정, 제주	7
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	<u>,</u> 세종특별자치
<u> 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</u> 전입금	시계정 및 해오름산업벨트지
	원계정으로부터의
8. ~ 12. (생 략)	8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	2
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회계의 지역지원계정, 제주	6
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	, 세종특별자치
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	시계정 및 해오름산업벨트지
	<u>원계정으로의</u>
7. (생략)	7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79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	제79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

- 세출)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5. (생략)
- 6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<u>및 세종특별</u> 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- 7. ~ 11. (생략)
-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14. (생략)
- 15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제주 특별자치도계정 <u>및 세종특별</u> 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
- 16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- 제80조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 저 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제주특 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(생략)
 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 <u>및 세종특별자치시</u>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 - 3. ~ 5. (생 략)

세출) ①
1. ~ 5. (현행과 같음)
6
<u>,</u> 세종특별자치
시계정 및 해오름산업벨트지
원계정으로부터의
7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
1. ~ 14. (현행과 같음)
15
, 세종특별자
치시계정 및 해오름산업벨트
지원계정으로의
16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80조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
입과 세출) ①
1. (현행과 같음)
2
, 세종특별자치시계정
및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으
<u>로부터의</u>
3. ~ 5. (현행과 같음)

-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3. (생략)
- 4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 <u>및 세종특별자치시</u> 계정으로의 전출금
- 5. (생략)
- ③ (생략)
- 제81조(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 입과 세출) ① 회계의 세종특 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(생략)
 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 <u>및 제주특별자치도</u>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
 - 3. ~ 5. (생 략)
 -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2. (생략)
 -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 <u>및 제주특별자치도</u> 계정으로의 전출금
 - 4. (생략)

(2		-
1.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,
		-
	, 세종특별자치시계정	
	및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으	_
	로의	
5.	(현행과 같음)	
3) (현행과 같음)	
제81	조(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	
o]	과 세출) ①	-
		-
	,	
1.	(현행과 같음)	
2.		-
	, 제주특별자치도계정	_
	및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으	_
	로부터의	
3.	~ 5. (현행과 같음)	
2)	-
	·	
1.	•2. (현행과 같음)	
3.		-
	, 제주특별자치도계정	_
	및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으	=
	로의	
4.	(현행과 같음)	

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

- ③ (현행과 같음)
- 제81조의2(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 정의 세입과 세출) ① 회계의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의 세 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
 - 2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 로부터의 전입금
 - 3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 입금
 - 4.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 상 잉여금
 - 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
 - ② 회계의 해오름산업벨트지원 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해오름산업벨트지원에 대한다음 각 목의 출연・보조 또는 융자 등
 - 가.
 제78조제2항제1호(같은

 호
 바목은
 제외한다)
 및

 제7호에
 따른
 보조
 및
 지

원

- 나.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

 7호까지, 제9호, 제10호 및

 제16호에 따른 출연・보조

 ・융자 및 지원 등
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사업
- 2.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 입금의 원리금 상환
- 3. 회계의 지역자율계정, 지역 지원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 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 로의 전출금
- 4.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 에 필요한 경비
-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·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